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0
----------	------

제출년월일 : 2011. 6. / 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함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의 동 당연직 고문 포함 및 고문 인원수를 동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능력 있고 봉사정신이 강한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출직 지방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선출된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
- 다. 위원 또는 고문의 결원에 따라 후임자로 위촉되는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0조).

## □ 개정조례안 : 붙임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5. 13.~6. 1.(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전문)

○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후임 위촉자 임기 현황

○ 다른 시 조례, 다른 자치구 조례 및 시행규칙(성남시, 광명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 제1항제1호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제16조 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5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각각 “필요한” 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며, 제13조제1항, 제2항,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 중 “범위안에서” 를 각각 “범위에서”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인” 을 “10명”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시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료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 시설운영업에 관한 보상기준 적용

제11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을 “사항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를 “규정에 불구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 모집공고를 하여도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어는”을 “어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동의 관할구역”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위촉 할 수 없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21조제2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제24조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손 경식
	담당 직위·성명	자치행정계장 김 종수
	담당자 성명·전화	이 재호 (행정 344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 뜻은 1.~2.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u>당해</u>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해당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략) ② <u>당해</u> 동의 여건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으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생략)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u>당해</u>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1.~2.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1.~2.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제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에 따른 ..... ..... 범위에서 .....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에 따라 ..... ..... ..... ..... ..... ..... ..... ..... .</p> <p>⑦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용료는 시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p> <p>2. 수강료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 시설운영업에 관한 보상기준 적용</p>
<p>⑦ (생략)</p> <p>제11조(권리, 의무 등) ①~② (생략)</p> <p>③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권리,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에 따른 ..... .....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① ..... ..... ..... ..... ..... .</p> <p>② ..... ..... ..... ..... .</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보고) ① (생략)</p> <p>②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당해</u>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 ① (생략)</p> <p>② ..... ..... ..... 해당 .. ..... ..... .</p>
<p>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다.</p> <p>1.~4. (생략)</p> <p>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기능) ① ..... 사항을 심의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 필요한 .. ..... ② ..... 규정에도 불구하고 ..... ..... ..... .</p> <p>③ .....에 따른 ..... ..... ..... ..... .</p>
<p>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p> <p>② 동장은 <u>당해</u> 동 주민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제17조(구성 등) ① ..... ..... 1명 ..... 25명 ..... ..... 5명 ..... .....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② ..... 해당 ..... .....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 모집공고를 하여도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위촉한다.</p>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⑦ .....  <u>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와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위촉 할 수 없다.</u></p>
<p>제20조(해촉) ① (생략)</p> <p>1. <u>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u></p> <p>2.~4. (생략)</p> <p>5. <u>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② <u>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u></p>	<p>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1. <u>해당</u> .....  .....  2.~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  .....  ② ..... <u>에 따른</u> .....  .....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u></p>
<p>제21조(회의)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u></p> <p>③~⑤ (생략)</p>	<p>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에 따른</u> .....  .....  ③~⑤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실비보상 등) .....  .....  ..... <u>범위에서</u>  .....</p>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3조의2(사기진작) ① .....  <u>범위에서</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u>이외의</u>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체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시행규칙 등) ..... <u>필요한</u>  ..... <u>외의</u>  .....  .....</p>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30
----------	------

제안년월일 : 2011. 7. .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행사당일 취소해도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민원이 자주 야기되었던 사항으로 행사 개시 전까지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반환시켜 주도록 반환규정을 신설하였고,
- 주민자치위원 25명중 고문을 5명 위촉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로 고문을 3명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 □ 주요골자

- 당일 사용개시 전까지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반환기준을 신설함.(안 제10조제7항제1호)
-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정원을 조정(5명→3명)하고, 지방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 지방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관할구역이란 선거구를 의미하도록 규정하고, 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재직기간으로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제8항)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7항제1호 중 “1일전까지”를 “전일까지”로 하고, “반환”을 “반환하고, 당일 사용개시 전까지 취소할 경우 50% 반환”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 “소비자기본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을 “위촉하되, 해당”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위촉한다.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의원이 고문인 경우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을 “고문의 임기는”으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사용료 등) ①~⑥ (생략)      ⑦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용료는 시설 사용개시일 <u>1일전까지</u>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u>반환</u></p> <p>2. 수강료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 교육시설운영업에 관한 보상기준 적용</p>	<p>제10조(사용료등) 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p> <p>1. ----- <u>전일까지</u>      ----- <u>반환하고, 당일</u>  <u>사용개시 전까지 취소할 경우 50% 반환</u></p> <p>2. ----- 「<u>소비자기본법시행령</u>」 -----</p>
<p>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⑤ 고문은 동장이 <u>위촉하되</u>, 당연직이 아 닌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동의 관 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로서 전문적 의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u>위촉한다.</u></p>	<p>제17조(구성 등) ① -----</p> <p>-----,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위촉하되</u>, 해당 -----      -----      -----      ----- <u>위촉한다. 다만,</u>  <u>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u></p>

##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⑥~⑦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0조(해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 촉된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의</u>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u>⑧ 지방의원이 고문인 경우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u></p> <p>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고문의 임기는</u> -----.</p>